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일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횡**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00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024

03. 비관세장벽 현황_ 027

04. 수출 애로사항_ 03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042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단위: 십억 달러, %)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2) 01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3,473억 달러(한화 약 510조 5,310억 원)로 전년 대비 1.6% 성장 하여 2022년과 비슷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706억 달러(한화 약 250조 7,82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49.1%를 차지함
 - * 채소류 시장이 규모 747억 달러(한화 약 109조 8,090억 원)로 가장 높은 21.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낙농품(9.3%), 육류 (8.9%), 과일 및 견과류(8.4%)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767억 달러(한화 약 259조 7.490억 원)로 전체 시장의 50.9%를 차지함
 - * 편의식품이 규모 676억 달러(한화 약 99조 3,720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9.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3%), 스낵류(7.2%), 소스 및 향신료(6.3%) 순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17.9	328.4	338.0	341.9	347.3	100.0	1.6
신선식품	155.1	160.2	165.1	167.5	170.6	49.1	1.9
- 채소류	68.5	70.8	72.8	73.7	74.7	21.5	1.4
- 낙농품	28.8	29.8	30.9	31.4	32.3	9.3	2.9
- 육류	27.9	28.8	29.8	30.3	30.9	8.9	2.0
- 과일 및 견과류	26.5	27.3	28.0	28.5	29.0	8.4	1.8
- 유지류	3.4	3.5	3.6	3.6	3.7	1.1	2.8
가공식품	162.8	168.2	172.9	174.4	176.7	50.9	1.3
- 편의식품	61.9	64.1	66.1	66.9	67.6	19.5	1.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0.6	51.9	53.1	52.3	53.2	15.3	1.7
- 스낵류	21.8	22.5	23.4	24.4	24.9	7.2	2.0
- 소스 및 향신료	20.2	20.8	21.3	21.6	21.8	6.3	0.9

4.4

3.8

8.0

4.6

3.8

8.0

4.6

3.8

0.8

1.3

1.1

0.2

- 펫푸드

- 스프레드 및 당류

- 영유아용 식품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3.5

3.9

0.9

4.1

3.9

0.9

0.0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1억 2,3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6% 감소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5,72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 인구 수는 약 6,340만 명(약 51.4%), 남성 인구 수는 약 5,990만 명(약 48.6%)으로 남녀 비중은 교등한 편임
- 2023년 가구 수는 5,39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1만 8,900달러 (한화 약 2,778만 원)로 집계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전체의 31.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5% 증가함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817.3달러(한화 약 414만 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 했으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액은 유사한 수준임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1,383.2달러(한화 약 203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49.1%를 차지함
 - * 채소류의 비중이 21.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낙농품(9.3%), 육류(8.9%)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1,434.1달러(한화 약 211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50.9%에 해당함
 - * 편의식품의 비중이 19.5%로 가장 크며, 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3%), 스낵류(7.2%) 순임

019~2023)	2019	앤(소비	신품	1인당	# 2
-----------	------	----	----	----	-----	------------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525.8	2,620.9	2,711.2	2,758.1	2,817.3	100.0	2.1
신선식품	1,232.0	1,279.2	1,324.6	1,351.9	1,383.2	49.1	2.3
- 채소류	544.6	565.0	584.0	594.9	606.1	21.5	1.9
- 낙농품	228.6	238.3	247.6	253.5	262.3	9.3	3.5
- 육류	221.5	229.9	239.0	244.6	250.3	8.9	2.3
- 과일 및 견과류	210.4	218.0	225.0	230.0	234.9	8.3	2.1
- 유지류	26.9	28.0	29.0	28.9	29.6	1.1	2.4
가공식품	1,293.8	1,341.7	1,386.6	1,406.2	1,434.1	50.9	2.0
- 편의식품	491.7	511.5	530.2	539.7	548.6	19.5	1.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01.9	414.4	425.7	421.9	431.4	15.3	2.3
- 스낵류	173.5	179.5	187.4	196.8	202.1	7.2	2.7
- 소스 및 향신료	160.9	166.2	171.1	174.1	177.1	6.3	1.7
- 펫푸드	27.9	32.5	34.9	37.0	37.5	1.3	1.4
- 스프레드 및 당류	31.1	30.8	30.6	30.5	31.2	1.1	2.3
- 영유아용 식품	6.8	6.8	6.7	6.2	6.2	0.2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주요 품목 중 채소류 소비량이 187.8kg으로 가장 크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양임
 - * 낙농품 소비량은 81.6kg, 과일 및 견과류 32.0kg, 육류 15.2kg, 유지류 5.3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 스낵류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증가 또는 유지함.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95.1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함
 - * 뒤이어 소스 및 향신료 소비량이 60.7kg, 편의식품 27.6kg, 스낵류 25.6kg,, 펫푸드 7.7kg, 스프레드 및 당류 6.3kg, 영유아용 식품 0.3kg 순으로 집계됨

丑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	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183.6	184.7	184.3	185.9	187.8	1.0
1114	- 낙농품	77.8	79.0	79.4	80.6	81.6	1.2
신선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31.6	31.4	31.2	31.6	32.0	1.3
식품	- 육류	14.6	14.7	14.8	15.0	15.2	1.3
	- 유지류	5.2	5.3	5.3	5.2	5.3	1.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4.5	95.4	95.5	93.8	95.1	1.4
	- 소스 및 향신료	58.7	59.5	59.8	60.2	60.7	0.8
71.77	- 편의식품	26.8	27.1	27.1	27.3	27.6	1.1
가공	- 스낵류	25.1	25.2	25.7	26.0	25.6	-1.5
식품	- 펫푸드	6.8	7.7	7.3	7.7	7.7	0.0
	- 스프레드 및 당류	6.7	6.5	6.2	6.2	6.3	1.6
	- 영유아용 식품	0.4	0.4	0.4	0.3	0.3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71억 5,034만 8,000달러(한화 약 10조 5,110억 원)로 전년 대비 4.9%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홍콩(17.2%), 중국(15.8%), 미국(14.8%) 등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 對홍콩 수출액은 12억 2,826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8,055억 원)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0%씩 감소함
 - * 對중국 수출액은 11억 2,734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6,572억 원)로 전년 대비 17.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5개년 연평균 6.7%씩 성장함
 - * 對미국 수출액은 10억 6,105만 달러(한화 약 1조 5,597억 원)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3억 6,646만 4,000달러(한화 약 5,387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1.3% 증가해 5위로 집계됨

(단위 : 천 달러, %)

							ui즈	증감	' 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115,321	6,795,947	8,007,235	7,521,755	7,150,348	100.0	-4.9	4.0
1	홍콩	1,448,668	1,739,956	1,672,745	1,263,844	1,228,262	17.2	-2.8	-4.0
2	중국	868,510	1,117,836	1,313,443	1,373,947	1,127,344	15.8	-17.9	6.7
3	미국	861,870	911,413	1,192,131	1,096,681	1,061,050	14.8	-3.2	5.3
4	대만	721,989	784,894	966,179	946,592	916,875	12.8	-3.1	6.2
5	한국	307,563	238,769	285,669	302,111	366,464	5.1	21.3	4.5
6	싱가포르	253,263	253,289	335,852	380,470	346,431	4.8	-8.9	8.1
7	베트남	265,373	317,002	367,843	399,573	333,361	4.7	-16.6	5.9
8	호주	149,855	146,326	194,574	202,134	200,883	2.8	-0.6	7.6
9	태국	183,509	178,683	222,703	221,740	199,566	2.8	-10.0	2.1
10	네덜란드	104,730	108,279	135,391	121,613	138,890	1.9	14.2	7.3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조제식료품(11.6%)이며 이외 가공식품, 주류, 육류 등 다양한 품목이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 * 조제식료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0% 감소한 8억 3,272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2,241억 원) 규모로 집계됨
 - * 기타 소스의 수출액은 4억 2,404만 달러(한화 약 6,233억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의 5.9%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위스키류(5.0%), 기타 빵(4.8%), 기타 발효주(4.3%) 등이 있음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u>2023)</u>

(단위: 천 달러, %)

							비즈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115,321	6,795,947	8,007,235	7,521,755	7,150,348	100.0	-4.9	4.0
1	조제 식료품	829,158	1,202,292	1,192,338	935,655	832,721	11.6	-11.0	0.1
2	소스(기타)	343,912	378,403	437,267	409,462	424,040	5.9	3.6	5.4
3	위스키류	178,470	254,059	420,653	429,541	357,458	5.0	-16.8	19.0
4	빵(기타)	308,337	318,856	400,366	382,649	342,201	4.8	-10.6	2.6
5	발효주 (기타)	222,849	232,820	377,246	372,377	305,038	4.3	-18.1	8.2
6	음료(기타)	206,121	234,968	263,518	270,686	259,189	3.6	-4.2	5.9
7	신선·냉장 쇠고기	128,849	135,421	232,108	207,006	211,174	3.0	2.0	13.1
8	냉동 쇠고기	143,380	134,876	256,857	186,040	195,064	2.7	4.9	8.0
9	동·식물성 유지	55,006	68,312	103,642	131,314	131,388	1.8	0.1	24.3
10	설탕과자 (기타)	130,411	111,738	135,061	125,964	130,992	1.8	4.0	0.1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679억 2,428만 7,000달러(한화 약 99조 8,487억 원)로 전년 대비 7.7%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19.3%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며, 그다음으로 중국(12.0%), 브라질(7.9%), 호주 (7.4%) 순임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30억 8,005만 4,000달러(한화 약 11조 9,784억 원)로 전년 대비 20.2%로 대폭 하락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0.2%로 감소세를 보임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81억 4,859만 3,000달러(한화 약 7조 8,626억 원)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나, 5년간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1억 1,665만 7,000달러(한화 약 3조 1,115억 원)로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8% 감소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려, %)

							ui즈	증감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3,457,399	61,317,927	66,801,898	73,562,172	67,924,287	100.0	-7.7	1.7
1	미국	13,203,783	12,887,972	15,062,798	16,384,316	13,080,054	19.3	-20.2	-0.2
2	중국	7,979,721	7,553,528	7,994,265	8,397,028	8,148,593	12.0	-3.0	0.5
3	브라질	3,407,771	3,428,219	3,170,477	4,687,230	5,348,711	7.9	14.1	11.9
4	호주	4,184,956	3,759,294	4,337,673	5,637,515	5,028,158	7.4	-10.8	4.7
5	태국	4,379,675	4,171,027	4,206,517	4,625,325	4,496,828	6.6	-2.8	0.7
6	캐나다	3,853,445	3,871,437	4,436,555	4,488,220	3,806,163	5.6	-15.2	-0.3
7	프랑스	2,036,149	1,802,771	1,979,699	2,095,269	2,119,620	3.1	1.2	1.0
8	한국	2,163,579	2,144,893	2,069,891	2,247,961	2,116,657	3.1	-5.8	-0.5
9	이탈리아	2,736,030	2,838,712	3,316,787	2,415,028	2,075,837	3.1	-14.0	-6.7
10	인도네시아	1,018,595	1,193,542	1,413,954	1,729,732	1,823,050	2.7	5.4	15.7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옥수수(7.2%)이며 이외 닭, 돼지, 소 등의 육류와 대두, 밀 등 곡류가 상위권에 위치함. 상위 10위를 차지하는 모든 품목은 전년 대비 수입액이 최소 5.1%부터 최대 29.9%까지 감소함
 - * 기타 옥수수 수입액은 49억 90만 5,000달러(한화 약 7조 2,043억 원)로 전년 대비 1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 닭고기 조제품의 수입액은 22억 4,188만 달러(한화 약 3조 2,956억 원)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으며, 전체 수입의 3.3%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대두(3.3%), 냉동 돼지고기(3.2%), 기타 밀(2.7%) 등으로 근소한 비중 차이를 보임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ui즈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3,457,399	61,317,927	66,801,898	73,562,172	67,924,287	100.0	-7.7	1.7
1	옥수수(기타)	3,510,218	3,283,435	4,726,974	5,837,681	4,900,905	7.2	-16.0	8.7
2	닭고기 조제품	2,420,340	2,229,177	2,251,722	2,488,782	2,241,880	3.3	-9.9	-1.9
3	대두(기타)	1,535,275	1,491,254	2,075,822	2,597,263	2,210,083	3.3	-14.9	9.5
4	냉동 돼지고기	2,655,799	2,368,736	2,338,279	2,380,734	2,166,054	3.2	-9.0	-5.0
5	밀(기타)	1,416,818	1,452,764	1,702,993	2,392,974	1,833,714	2.7	-23.4	6.7
6	냉장 돼지고기	1,964,463	2,070,159	2,097,297	1,843,808	1,750,467	2.6	-5.1	-2.8
7	신선·냉장 쇠고기	2,110,172	1,950,940	2,187,537	1,839,177	1,554,695	2.3	-15.5	-7.4
8	볶지 않은 커피	1,139,563	1,052,939	1,184,028	1,624,539	1,424,249	2.1	-12.3	5.7
9	유채씨(기타)	1,032,791	965,838	1,602,764	1,966,561	1,379,105	2.0	-29.9	7.5
10	냉동 쇠고기	1,394,397	1,375,627	1,504,700	1,897,436	1,352,424	2.0	-28.7	-0.8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억 3,507만 4,000달러(한화 약 3조 452억 원)로 전년 대비 6.6% 감소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93.7%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3억 4,525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9,775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3%의 성장률을 기록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일본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려, %)

				21 2022 202		ui즈	증감	' 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26,883	1,336,388	1,422,096	1,537,179	1,435,074	100.0	-6.6	0.1
농산물	1,331,653	1,254,577	1,337,199	1,441,702	1,345,254	93.7	-6.7	0.3
축산물	30,933	34,843	45,904	59,054	49,738	3.5	-15.8	12.6
임산물	64,297	46,968	38,993	36,423	40,082	2.8	10.0	-11.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기타 조제식료품, 조미김, 건조김, 단고추(벨타입), 김치 등이 있음
 - * 기타 조제식료품 수출액은 9,482만 5,000달러(한화 약 1,394억 원)로 전년 대비 6.1% 증가함
 - * 조미김 수출액은 7,341만 6,000달러(한화 약 1,079억 원)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6.6% 성장함
 - * 건조김은 전년 대비 71.5%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동시기에 단고추(벨타입)는 12.2% 감소함

표 9. 한국의 對일본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즈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2,158,304	1,995,051	2,056,693	2,160,737	2,071,554	100.0	-4.1	-1.0
1	조제식료품 (기타)	94,909	97,918	107,356	89,402	94,825	4.6	6.1	0.0
2	조미김	21,060	78,073	74,508	67,660	73,416	3.5	8.5	36.6
3	건조김	59,006	54,697	39,615	40,880	70,108	3.4	71.5	4.4
4	단고추 (벨타입)	91,244	86,211	81,795	72,880	63,973	3.1	-12.2	-8.5
5	김치	55,184	71,099	80,124	60,996	61,491	3.0	0.8	2.7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	국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수출업체
	▼	
적하 목록 사전제출	•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 제출내용: ①제품정보 ②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③운송수단 정보 등	일본 운송·수입 업체
	▼	
수입신고	•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상업송장 ②선하증권 ③원산지증명서 ④포장명세서 등	
	▼	
수입검사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방역소 및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① 식물방역소: 채소, 과일 등 식물계 식품 ② 동물검역소: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① 서류심사 ②현장검사 ③시험검사 또한,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① 검사명령 ②지도검사 ③모니터링 검사 ④행정검사	일본 수입업체
	▼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CIF가격+가산요소*) X 관세율 * 가산요소: 수입항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라이선스료 등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 사전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일본 수출 시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접수 결과에 따라 ①서류심사 후 수리 ②현품 검사 후 수리 ③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수출신고필증 ②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일본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일본으로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UNI-PASS를 통해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신고 수리 유형〉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식물검역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검역 축산물검역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 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일본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일본 수입통관·검역 절차

사전 수입신고

- 일본 수입업체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항 도착 7일 전까지 사전 수입신고 진행 가능
- 일본 식품 수입업체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수입신고 진행 가능
- 사전 수입신고 진행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검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직후 수입제증명이 수입업체에 교부됨
- '수입제증명'을 발급받은 일본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적하목록 사전제출	• 일본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사전제출 필요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적하목록 제출 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함 (일본 적하목록 제출서류) ①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⑤ 총중량 ② 착하통지처 정보 ⑥ 용적 ③ 품명 ⑦ 컨테이너 정보 등 ④ HS 코드
수입신고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도착 후 수입신고 진행 필수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제출해야 함 (일본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 ⑥ 화물도착안내서 ② 선하증권 ① 운임청구서 ③ 원산지증명서(필요시) ④ 포장명세서 ⑤ 위생증명서·시험성적서(필요 시) 등 ⑥ 수입신고서
수입검사	 일본 수입업체는 화물 도착 후 각 검역소에 검사 신청 △채소 △과일 등 식물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에,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 식품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수입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식물방역소에 식물류 식품의 수입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검사신청서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식물검역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①수입금지 품목 ②검사대상 품목 ③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해 검역을 진행하며,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동물검역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검역대상 품목(지정검역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검역대상 품목은 동물검역소의 수입 검사를 통과하여 수입검역증을 취득하거나 일본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한국산 식품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육류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열처리 가금육 (소시지, 너겟, 훈제 등), 돼지 열처리 내장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수출이 허용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 △신고내용의 확인(서류심사)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검사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이 진행됨
- 서류심사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출품목, 제조사·제조소, 원재료, 제조방법, 식품첨기물의 사용 유무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함
- 현장검사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처음 수입된 식품 또는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품이 보관된 창고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감시원이 실시하며,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 하기도 함
- 시험검사 시행 시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를 명령하거나 지도검사
 등을 검역소에서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함
- 적합 판정의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함
- 부적합 판정의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거나,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함. 또는 폐기 처분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함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검사 내용)

서류심사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원재료 사용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절성 여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 제조사 제조소의 과거 위생 관련 부적격 사례 여부, 수출국에서 회수 대상 제품 여부, 필요한 서류(수출국 위생증명서 등)의 첨부 여부를 검사
현장검사	부패 등 식품으로 부적합 상태 여부, 이물의 혼입 여부 보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독어 등 혼입 여부(어류), 위험 부위 등 혼입 여부(쇠고기)
시험검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기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미생물, 성분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세균 수, 대장균군 등,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등 유해물질, 미승인 유전자 변형 식품의 혼입, 방사선 살균 여부 등

수입검사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 검사 ④ 행정검사 실시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검사 내용〉

검사명령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검역소가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건마다 검사실시 명령 *검사 대상 품목, 검사 항목, 검체 채취 방법, 검사 방법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하고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절차 진행 불가
지도검사	수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입자에 대해서 최초 수입 시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절차 진행 불가
모니터링 검사	식품위생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간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검사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이내에서 관련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짐
행정검사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검사로, 최초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송 도중 사고 발생 시 등 필요에 따라 검역소의 식품위생 감시원에 의한 검사 실시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입검사

- 일본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율은 관세정률법에 의거 분류된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
-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기본세율, 잠정세율(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을 수정한 세율), 특혜세율(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협정세율(WTO에서 정한 세율), EPA세율(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한 당사국간 정해진 세율) 등 적용

● FTA 체결현황

표 10. 일본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싱가포르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 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 ASEAN EPA, 스위스 EPA,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몽골 EPA, 멕시코 EPA, TPP12,	(협상 중) 콜롬비아 EPA, 한-중-일 FTA, 튀르키예 EPA, GCC FTA, 방글라데시 EPA (협상재개·개시 여건조성) 한국 FTA, GCC FTA.	해당사항 없음	

캐나다 EPA, 메르코수르 FTA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표 11	. 우리	나라와의	FTA 처	결현황

TPP11, EU EPA, US EPA(JTA),

UK EPA, RCEP, CPTPP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RCEP	해당사항 없음	한-중-일 FTA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 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 축산물

- 삼계탕, 가금육, 열처리 돈육, 증제 피혁분, 젤라틴/콜라겐, 사료용 돼지귀, 사료용 어골, 열처리 가금 육(소시지, 너겟, 훈제 등), 열처리 내장 및 부산물, 유제품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 모과(Pseudocydonia), 조팝나무(Spiraea), 메들라(Medlar), 비파(Loquat), 마르멜로(Cydonia), 개장미(Rosa canina), 아로니아속(Aronia), 홍가시나무속(Photinia), 크라타에고메스필루스속 (Crataegomespilus), 채진목속(Amelanchier), 사사나무속(Populus), 섬개야광나무속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Cotoneaster), 다정큼나무속(Raphiolepis), 스트란바에시아속(Stranvaesia), 오스테오멜레스속 (Osteomeles), 디코토만테스속(Dichotomanthes), 피라칸사속(Pyracantha), 도시니아속 (Docynia), 배나무속(Pyrus), 마가목속(Sorbus), 헤테로멜레스속(Heteromeles), 페라필럼속 (Peraphyllum), 명자나무속(Chaenomeles), 사과나무속(Malus)

- * 한국산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상기 품목은 수출이 금지됨
- 재식용, 생식물 포함/과실 및 종자 제외
- : 복숭아·벚나무속(Prunus), 유럽빗살나무(Euonymus europaeus), 영하구기자(Lycium barbarum), 쥐똥나무속(Ligustrum)
 - * 상기 품목은 자두곰보병 기주식물로 수출이 금지됨
 - * 일본 검역 당국은 자국으로 수입 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pps.go.jp/eximlist/ Pages/exp/conditionE.xhtml)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Hiroba (일본)
업체 유형	도매,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r. Chaeminsoo (영업 담당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국산 농식품은 항상 수요가 있는 편임. 그 중 김치는 독특한 맛과 건강에 좋다는 이점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등 다수의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매우 라면류도 수요가 높음
- 일식에서 활용도가 높은 한국산 채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호박, 깻잎, 고추, 마늘이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잘 알려짐. 감자, 양파 등 일본 요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른 한국산 채소들도 전망이 좋음

•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애로사항

- 농산물은 수입 시 엄격한 검역절차와 복잡한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함.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때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해 수입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물류비와 운송시간도 영향이 있으나 이는 매년 개선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농식품 안전 이슈

-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원산지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이러한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규제 기관의 조사와 국경 검역이 강화되고 있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샘플링 검사 결과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잠재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식품, 식품첨가제, 조리 기구, 용기와 포장의 생산과 판매, 특정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2020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 가능함
 - 식품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함
 - 2023년 5월 31일부터 한국산 사과주스의 파툴린(Patulin) 성분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빈도를 30% 높임
-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건강 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의 규제를 적용함. 일본에서는 동 식품을 약사법에 의해 효능을 명시하여 약품으로 분류하므로 해당 식품은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함
- 2023년 5월 15일, 한국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홍삼 함유제품에 적용)
-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고추, 깻잎 등의 신선 채소류가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문제로 통관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2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재개정하였으며, 신선 고추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음
 - * 한국산 청고추에 대한 일본 수출 시 부과되는 명령검사 성분(2가지): 플루킨코나졸(ID등록시 면제), 헥사코나졸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수입에 농약성분 잔류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2023년 8월 7일 부터 농약성분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함. 일본이 개정한 기준은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물질이 많아 대일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일본으로 특정 과일, 채소류의 공식 수입승인과 병해충위험평가 신청 시, 수출국은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1단계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됨. 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2015년 6월 2일부터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이 금지된 후 해제되지 않았으며, 복숭아의 수입도 제한됨
- 육류 및 가금류와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한국 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 (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가금류의 경우,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 충족 시 검역 통관가능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db.ffcr.or.jp/fron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7.html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 standards_evaluation
미생물 규정	위험 식품의 미생물 기준 규정 (후생노동성-식중독(Food Poisoning))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 standards_evaluation/other/category

^{*} 식품 위생에 대한 행정 주관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됨('24.4.1부터)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2024년 수입식품 모니터링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일본은 매년 후생노동성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기준을 발표함. 2024년 3월 28일 「2024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이에 본 기사에 발표된 계획에 따른 한국산 모니터링 강화 품목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세부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원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 검사, ④ 행정검사를 실시함. 모니터링 검사 대상 중 잔류농약 등과 관련된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가 30%로 증가함.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조자, 제조사, 수출업체 또는 포장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시 마다 검사를 실시함. 또한, 수출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유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경우 또는 강화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6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해제함 ・모니터링 검사 대상 및 기간 - 적용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내용: 모니터링 검사빈도를 수입된 물량의 30%로 강화함 - 대상 품목(한국산): 참깨 및 그 가공품,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 과즙, 붉은 고추 및 그 가공품, 양식 넙치 및 그 가공품 •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취해 짐. 반복적으로 문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수입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은 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출 기준을 확인 및 준수할 것을 권장함
통보일	2024년 3월 28일
시행예정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26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일본 농수산성에 의해 식물 유래 유기농품, 유기농 가공식품 및 유기농 축산물에 관한 일본 농림표준(JAS) 개정안이 2024년 2월 9일 JAS 협의회에서 정식 승인됨. 기존 개정안(G/TBT/N/ JPN/788)을 일부 수정하여 유기농 제품의 규격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기준 강화를 위한 추가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일본 소비자청(CAA)은 식품 기구, 용기 및 포장에서 합성수지 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의 원료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디부틸 푸마르산염 등 3종의 물질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
 - * 에톡실화 및/또는 프로폭실화 글리세롤 관련 요구사항 변경
 - * 비스(노닐페닐)아민 등 13종의 신규 물질을 Positive List(PL)에 추가
 - * 신규 포함된 물질의 고분자 그룹별 사용 한도 및 요구사항 규정
- 2024년 3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기능성 식품에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이 검출되어 8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일본 소비자청(CAA)은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제안함
 - * 기능성 표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청 및 지방정부(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할 의무 부과됨
 - *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정보를 판매일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 기능성 식품 중 식이 보충제는 GMP(우수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공정을 관리해야 함
 - * 향후 해당 제품의 라벨에 GMP 기준 준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 본 개정안은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24년 6월 27일 통보되어 7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
- 일본 소비자청은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특수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의 라벨링 기준을 개정함
 - * 특정 보건용 식품(특정 건강 기능 식품, FOSHU)은 제외됨
 - * 기존 공고문에 규정된 특수용도식품 라벨링 항목을 내각부령(Cabinet Office Ordinance)에 포함
 - * 소비자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벨링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일본 소비자청(CAA)	https://www.caa.go.jp/en/policy/food_labeling/
JAS인증 스마일케어 인증	일본 농림수산성(MAFF)	https://www.maff.go.jp/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제품명원재료첨가물	・알레르겐 ・보관 방법 ・내용량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정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필수항목)	• 원산지	• 영양성분
	제품명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함
	시합성	명칭에 주요 원재료명이 들어가는 경우, 주요 원재료와 일치해야 함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
	원재료	원재료가 2가지 이상(복합 원재료)인 경우, 괄호 안에 배합률이 높은 순으로 기재해야 함
		복합 원재료가 제품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생략 가능함
		지정첨가물: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436 품목
		기존첨가물: 일본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사용된 것 또는 예외로 지정받지 않은 치자 색소, 감 탄닌 등 365 품목
	-	천연향료: 동식물 유래 물질로 식품에 향 첨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닐라 향료, 게 향료 등 약 600 품목
라벨	첨가물	일반 음식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 딸기 주스, 한천 등 약 100 품목
표기사항 (가이드)		특정 지정첨가물 및 기존첨가물은 포지티브 리스트 식품첨가물로써, 해당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원재료 표시란에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해야 함
	원산지	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지국을 표시해야 함
		표시 의무사항: 새우, 밀, 게,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 호두
		표시 권장사항: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얌, 사과, 젤라틴
	알레르겐	해당 항목 포함 시 식품명 다음 괄호에 '알레르겐'을 표시해야 함
	2 ⁻¹ — C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한 첨가물 함유 시 그 첨가물 물질명 다음 괄호에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함을 표시해야 함
		'OO을 포함'이라는 문구의 OO에는 특정 원재료 등의 이름을 표시하고, 특정 원재료에서 유래한 경우 'OO 유래'로 표시해야 함

^{*}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일본소비자청(消費者)

	내용량	단위는 중량은 그램(킬로그램), 부피는 리터(밀리리터), 수량은 개수로 기재해야 함					
		고형물에 충전액을 더한 경우 내용량 대신 고형량과 내용 총량을 함께 적어야 함 (ex. 통조림 등)					
		수입자는 스스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고 표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소비기한 또는	제조 또는 가공한 날로부터 유통기한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평성 26년 5월 31일', '26.5.31', '2014.05.31.', '14.5.31' 중 선택 가능함					
	유통기한	제조 또는 가공한 날로부터 유통기한까지 3개월이 넘는 경우: '평성 26년 5월', '26.5', '2014.05', '14.5' 표기 중 선택 가능함					
		일본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재료 별 원산지 정보 기재 의무 미적용					
		의무 표시 정보: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식염 상당량)					
	영양성분	권장 표시 정보: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기타 표시 정보: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및 미네랄류 등					
라벨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분 또는 1포장 단위로 표시해야 함					
표기사항 (가이드)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존', '10도 이하에서 보존' 또는 '개봉 후 냉장 보관' 등의 보관에 적절한 유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상온 보존 이외에 특별한 유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수입업체 및 제조 업체 정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표시해야 함					
		언어는 일본어로 표시해야 함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해야 함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 표기 가능					
	기타 표시 사항 첨가물	일본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를 사용 가능함					
		알콜 표시는 도수(%)와 함께 그램(g)으로도 표시해야 함 - 계산식: 섭취량(mL) x 알콜 농도(도수/100*0.8 ⁵⁾ (ex. 맥주 500mL 알콜 도수 5%의 경우 순 알콜량: 500mL x 0.05 x 0.8 = 20g)					

^{*}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일본소비자청(消費者)

⁵⁾ 알콜의 비중

• 주류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일본 청주
원재료(원료원산지명)/ 첨기물	쌀 (일본산), 쌀 누룩 (일본산 쌀), 정미 비율 60%, 알콜 15도
내용량	750ml
제조자(양조자)	야마우치 타카히로
제조자	시미즈 세이자부로 상점주식회사 (미에현 스즈카시 와카마츠 히가시 산초메9번33호)
제조연월	2024.06
주의사항	20세 이후 음주 가능/적당량 섭취 필요/임신 중 음주는 태아, 유아의 발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매실가공품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건조과일	건조과일				
원재료명	프룬					
유통기한(미개봉)	유통기한은 미개봉 2025.07.04	상태로 표시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내용량	150g					
원산지명	미합중국					
가공자	크라운푸드 주식회사 (요코하마시 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1-13-8)					
가공소	크라운푸드 주식회사 요코하마 공장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후쿠칸 2-1-4)					
보관방법	본 제품은 보존료를 드십시오.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빨리				
	에너지	244kcal				
	단백질	0.2g				
	지방	0.3g				
영양성분표시(100g당)	당) 탄수화물 61.4g (당질: 55.3g, 식이섬유: 6.1g)					
	나트륨	2mg (식염상당량: 0.0g)				
	칼륨	720mg				
	철	0.8mg				

● 인증

[선택 인증]

• JAS

- JAS인증은 일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인증으로, 유기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임산물, 특정 육가공품, 양식어류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식품의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함. 그러나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인증명	· JAS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권장 (유기농 등 유사표기 시 필수)	(JAS)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생산 일정 관리 담당자의 성명·약력 등	
비용	• 1,200~2,000만원	
소요기간	• 8주 이상	
절차	•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 발급(1년 유효)

• JGAP

- J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과, 곡물, 차에 적용. 4,500개 농장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됨.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안전성, 환경 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 JGAP 인증(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JGAP 협회	JGAP			
강제유무	• 권장(농장이나 농업경영체만 신청가능)	認証農場			
제출 서류	・생산자명단, 필지명단, 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登録番号 123456789			
비용	• 품목당 128,000엔 이상				
소요기간	• 약 4주 (사전 준비기간 제외)				
절차	'JGAP관리점과 적합 기준' 사전확인 및 자가점검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 → 판정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은 고령자용 식품을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으로,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함. 젤리, 푸딩,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음.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등급(황색4, 적색3)으로 분류되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함

인증명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7-24					
발행 및 검사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 선택	Smile					
제출 서류	스마일케어 인증신청서(회사명, 상품상태, 연간 생산예정량 등)라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 함 청색 라벨: 자기적합선언 및 상품 소개 URL 황색 라벨: 저작배려식품에 대한 JAS 규격 인증서 사본 적색 라벨: 특별용도식품 표시 허가서 사본)	Smile Care Food					
비용	· 없음 (온라인 등록)						
소요기간	• 2개월 이내						
절차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 신청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 인증마크 발급 (유효기간 무기한)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4년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32건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2024년 기준 위생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 2022~24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8	5	10	23
위생	21	21	15	57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5	2	2	9
기타	2	3	5	10
합계	36	31	32	99

▶ 2024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4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32건으로, 위생 15건, 성분 부적합 10건, 기타 5건, 잔류농약 검출 2건으로 집계되었음

표 14. 2024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0	0	0	0	1	2	4	0	1	2	0	10
위생	3	2	0	0	2	3	1	1	0	2	0	1	15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1	0	0	0	0	0	0	1	2
기타	0	0	0	0	0	1	4	0	0	0	0	0	5
합계	3	2	0	0	3	5	7	5	0	3	2	2	32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폴리소르베이트 검출	3			
	수크랄로스 검출	1			
성분 부적합	엔로플록사신 검출	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출	2			
	프로필렌글리콜 검출	3			
	대장균 양성	12			
OIAH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 검출	3			
위생	프로피코나졸 검출	1			
	헥사코나졸 검출	1			
7151	보존기준 부적합	1			
기타	제조기준 부적합	4			
	합계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기타조제 농산품	9	28.1	세균수 초과
	과자류	4	12.5	프로필렌글리콜 검출
-110	소스류	3	9.4	성분규격 부적합
농산물	음료	3	9.4	대장균 양성
	채소류	2	6.3	잔류농약 검출
	인삼류	1	3.1	보존기준 부적합
소 계		22	68.8	
수산물	갑각류	5	15.6	대장균 양성
	어류	3	9.4	성분규격 부적합
	수산부산물	2	6.3	성분규격 부적합
	소 계	7	31.3	
총합계		32	100.0	

04 수출 애로사항

♪ 알룰로스 수출 기준 및 GMO 인증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알물로스
유형*	SPS
주요 내용	 일본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알룰로스(D-プシコース)는 난소화성 탄수화물로 분류되어 에너지 환산계수가 0 kcal/g으로 규정됨 영양성분 표시 시 알룰로스는 다른 단당류와 달리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는 성분으로 취급되어 0 kcal로 표기가 가능함 제품의 영양성분표 작성 시 탄수화물, 당류와 함께 알룰로스를 별도로 표기해야 하며, 알룰로스의 경우 함량과 함께 칼로리를 0 kcal로 명시해야 함 알룰로스 제조에 사용되는 プシコースエピメラーゼ(푸시코스 에피메라아제) 효소는 일본의 식품첨가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해당 효소의 사용 적합성을 증명해야 함 GMO 유래 효소를 사용하여 알룰로스를 제조하는 경우, 일본의 GMO 표시 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에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Non-GMO 효소를 사용하여 알룰로스를 생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인증서 및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알룰로스 함유 제품의 수출 시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한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사항을 제품에 반영해야 함
애로 사항	• 한국에서 사용되는 알룰로스의 일본 수출을 위한 규격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가물 여부 및 알룰로스 제조 시 사용되는 효소의 GMO 인증 요건에 대한 혼선이 있음
기타	※《식품 표시법》 규정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의 라벨링 기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기타조제 농산품
유형*	라벨링
주요 내용	 일본의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으로 제품명, 원재료, 첨가물, 원산지, 알레르겐, 내용량, 소비/유통기한, 영양성분, 보관방법, 수입/제조업체 정보를 포함해야 함 식품첨가물은 지정첨가물(436개), 기존첨가물(365개), 천연향료(600개), 기타 첨가물 (100개)로 구분되며 포지티브 리스트 원칙에 따라 지정된 첨가물 외 사용이 불가함 영양성분은 100g/100mL 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등은 권장 표시 항목임 모든 표기는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폰트 크기는 최소 8포인트 이상을 준수해야 함 유기농 표기는 인증 획득 시에만 가능하며,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표시는 일본 건강증진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 GMO 원료 사용 시 별도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이 제정한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 원재료는 중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하며, 복합 원재료의 경우 괄호 안에 배합률이 높은 순으로 기재해야 함
애로 사항	• 일본의 식품 라벨링 규정이 미국과 달리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언어적 차이로 인해 aT 컨설팅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움
기타	※ 일본의 식품 표시 기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견과류 제품의 대장균 및 미생물 적용 기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호두 및 견과류
유형*	SPS
주요 내용	호두 및 견과류는 일본에서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미생물 기준이 적용됨 일반 가공 식품의 미생물 기준 1) 일반 세균수: 제품 1g당 100,000 CFU 이하 2) 대장균군: 25g 샘플에서 불검출 3)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불검출
애로 사항	• 호두 및 견과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및 대장균 적용 기준이 한국과 상이하여 수출 시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의 원문 규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 zanryu/591228-1.html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육류제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율 등 통관 검역시 주의 사항
- 수입시 검사항목
- 성분 적정성과 표기안

♪ 제품 조사 결과

- HS CODE 및 관세율
 - HS CODE는 일본 세관의 분류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일본의 수입관세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협정세율, 작정세율, 특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 RCEP 해당 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RCEP 세율적용 가능

분류	HS CODE	기본 관세율	WTO 협정세율	RCEP 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소시지류 제품 - 기타 조제품	1602.00.900	10%	10%	_	-	-

• 기타 수입 관련 세율

- 곡물세 : 주식량으로 분류되는 곡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수입시 적용되는 세금

- 설탕세: 설탕이 주 성분인 제품의 수입시 적용되는 세금

- 소비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세금

곡물세	설탕세	소비세	
-	-	(CIF VALUE x 관세) x 10%	

• 수입 시 제출 서류

- 제품 성분배합표: 금지성분 사용 및 규격제한 성분의 함유량 확인
- 제조 공정도: 제조공정 중 주요위생처리 및 누락된 과정이 없는지 확인
- 제품 사진: 제품의 내용물 및 포장 상태를 확인
- 인보이스(INVOICE): 상품의 판매 단위, 단가의 확인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상품의 포장 단위, 중량 등의 확인
- 원산지증명서: RCEP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필요

• 검역 사항

- 식물 검역: 식물의 수입 시 병균이나 해충의 부착여부 확인
- 동물 검역: 동물, 축산물의 수입 시 전염성 질화의 감염여부 확인
- 일본으로 첫 수입 진행 시에 동물검역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 당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증 원본 제출 후 일본 동물검역소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함

• 식품 검사

- 규격 성분 검사: 제한 성분의 해당 허용 수치량 확인
- 냉동 규격 검사: 냉동식품의 세균 허용 기준치의 초과여부 확인
- 레토르트 규격 검사: 진공 및 멸균 상태 확인
- 규격 검사: 중금속 및 세균의 허용 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 모니터링 검사: 통관 완료 후 후생성 지정으로 무작위 실시

• 성분 검토

- Sodium nitrite(아질산나트륨): 육류제품에만 사용가능하며 최대사용량은 0.007%
- Silicon dioxide(이산화규소): 사용 후 최종제품에서 제거 필요(미립일 경우 함유량 확인 필요)
- Dioxide sulfur(이산화황): 최대사용량 0.03g/kg 미만
- HFCS(고과당 콘시럽): 공업용 화학물로 식품첨가물 리스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되었을 경우 식품으로 수입불가
- 전체 제품: 일본 식품 규격에 맞추어 성분 명칭과 함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 시 식품위생법상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레토르트제품 규격 및 첨가물 사용량에 대한 식품검사지시 가능성이 있음

• 검사 관련 주의사항

- 일본 후생성이 인증한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일본 도착후 검역소에서 검사성적서에 있는 성분 이외에도 검사 명령을 할 경우, 일본 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세균류의 검사는 한국의 검사성적서가 있어도 운송 시 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지 않음
- 한국의 검사 성적서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일본 검사기관 성적서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 수입이 불허됨
- 검역관의 지시에 의해 별도 추가서류 및 서류의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통관 관련 주의사항

- 일본에서 가공식품을 수입할 경우 검사지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량 물량을 처음부터 수출 하지 않고 소량의 테스트 통관을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통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이 계속되면 후생성의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등의 페널티를 받게됨
- 수입제품의 검사 실시 유무 및 검사 항목 등에 대한 확인은 식품 수입 신청서를 관할 검역소에 제출한 후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결정함

• 수입자 표기 및 영양성분 표기시 유의 사항

- 일본의 경우 식품 수입시 상품에 수입자표기 및 영양성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통관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유통할 때는 법령에 준하는 내용을 표기하거나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함
- 수입자 표기시 글자 크기는 상품 포장 면적에 따라 문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음. 상품 포장 면적이 대략 150cm² 이상일 경우 문자의 크기는 8포인트 이상, 대략 150cm² 이하일 경우 5.5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합(IIS 규격 Z8305(1962)에 따른 표기)
- 숙취해소, 혈류개선 등 치료 및 효능에 관련된 문구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 포장지에는 자체 검사기관 또는 외부 검사기관에서 시험된 결과를 근거로 영양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는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섭취 방법에 대한 표기가 필요하며,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음

• 리사이클 마크 표기

- 용기가 병인 경우 리사이클 마크는 불필요하며,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 마크표기가 필요함
- 플라스틱 마크의 한 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이어야 함

• 사전 확인제도 이용

- 일본의 경우 공장 사전 등록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시 검역소에 의해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함
- 이에 공장 등록은 필요 없으나, 향후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 및 제품을 일본 검역소에 등록시키는 사전확인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공장, 동일한 제품에 한해 3년에 1회로 검사가 면제되어 수입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도개선을 이유로 신규 신청 접수를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임

♪ 자문 결론

• 국내 제조공장이 일본 농림수산성의 별도 승인공장이 아닌 경우, 캔통조림 멸균조건인 중심온도 120도에서 4분 이상 가열처리를 함으로써 레토르트 제품으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수입 시에는 일본검역소에 실제제품 및 자료를 사전제출 후 감정받을 필요가 있음

(2) 과실주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율 등 통관 검역시 주의 사항
- 수입시 검사항목, 공장 등록 사항 등

♪ 제품 조사 결과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류	제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WTO	비고	
				RCEP		
-	기타 발효주 – 기타제품	-	2206.00-229	¥43.10/L	¥120,000 /KL *주류세 부과	
				¥42.40/L		
				¥36.34/L		

• 식품 규격 기준 분류

- 본 제품은 알콜을 첨가한 과실맛 주류로 알콜 농도(13℃ 미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류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성분 규정

- 본 제품이 0.02% 함유한 메타중아황산칼륨(POTASSIUM METABISULFITE)의 최대 사용량은 0.035%이며, 본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시 해당 성분이 실제로도 0.02%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함량 검출 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 공장 등록 관련 사항

- 일본의 경우 공장 사전 등록제도는 유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시 검역소에 의해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함
- 이에 공장 등록은 필요 없으나, 향후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 및 제품을 일본 검역소에 등록시키는 사전확인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공장, 동일한 제품에 한해 3년에 1회로 검사가 면제되어 수입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도개선을 이유로 신규 신청을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임

♪ 자문 결과

- 본 제품은 알콜 농도(13℃ 미만)에 따라 주류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성분 함량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는 함량검출 검사 실시될 수 있음